

검토보고서

2024. 8. 29.(목)

검토안건	발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인순 의원외 9명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안경위

- 제안자 : 권인순 의원 외 9명
- 제안일 : 2024. 8. 16.
- 회부일 : 2024. 8. 19. (의안번호 : 24-92)

2. 제안이유

- 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할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기능을 강화하여, 가정과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보호자가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책무(안 제4조)
- 나. 법 개정예 따라 아동학대 신고기관에 자치구를 추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삭제(안 제8조)
- 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라.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안 제13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22조, 제29조의7」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 2024. 7. 24. ~ 7. 30.(제출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권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할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기능을 강화하여, 가정과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4조에서는 보호자가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8조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기관에 자치구를 추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13조에서는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음.

○ 본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살펴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아동의 보호자가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복지부의 2022년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건수는 2018년 28건에서 2020년 43건, 2022년 50건으로 증가하고 있음.

아울러 2023년 마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연구회’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 피해아동을 포함한 보호자 및 가족에게 상담, 교육, 신체·심리적 치료 지원,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는 개선의견을 제시함.

○ 종합검토의견

안 제4조 보호자의 책무 규정을 보면,
2022년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부모에 의한 학대가 23,119건(82.7%)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리양육자¹⁾는 3,047건(10.9%)으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함.

이웃, 낯선 사람처럼 타인에 의한 건수는 573건(2%)에 불과하여 실제로 아동이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하는 보호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1)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의 자녀를 하루의 일정시간 동안 대신 양육해주는 사람 (부·모의 동거인,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청소년관련 시설 종사자, 아이돌보미 등)

- 안 제8조의 아동학대 신고기관에 자치구를 추가하는 것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며,
 - 안 제12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은 아동복지법 제 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에 따라 구청장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나 2022년 말 기준 서울시 내에는 42개의 전담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는데, 마포구에는 지정 의료기관이 없어 지정 필요성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 안 제13조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의 추가 지원 또는 부모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기능을 강화하여 구민복지 증진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며 상위 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안 제8조 관련 아동학대 신고기관에 자치구가 추가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2020. 3. 24.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가족행복 지원과	김은숙 (8910)	우정옥 (86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가족행복지원과 이수경
연 락 처	02-3153-8612

참고 자료

1.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의료기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피해아동·가족·친족,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경찰관서의 장, 판사 또는 가정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4. 7.>

1.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
2. 신체적·정신적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생략)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생략)

2. 마포구 현황

□ 기본현황

-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현장조사 동행 및 응급조치, 사례판단 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 등 시행
- 서울시 아동학대 대응기관 협력체계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 학대피해아동쉼터

- 관내 1개소(장애여아 대상)가 있으며 일반아동은 필요시 ‘서부아동복지센터’ (은평구 소재)로 입소함
- 학대피해아동쉼터 조항이 있는 자치구²⁾는 6곳이며, 구립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노원구, 서초구 등에서 운영하고 있음

○ 지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관내 없음

- 서울시에는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³⁾ 1개소 및 서울시 지정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7개소⁴⁾ 있음
- 서울시 8개 자치구⁵⁾가 조례에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조항을 명시하였음
- ※ 노원구: 병원 2곳과 업무협약(학대피해아동 발견, 응급조치 및 진료, 수사협조, 의학적 자문 등에 대한 상호협력)체결, 비용은 노원구청이 지원

○ 아동학대 판단되면 ‘서울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⁶⁾’으로 이관하여 사례관리

- 학대행위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심리치료도 진행하고 있음

□ 마포구 아동학대 통계 현황 (기준 : ‘24.5.1. / 단위 : 건)

○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학대 판단 현황 (202건중 학대판단125건, 약 61%)

연도	신고 접수 건수			학대 판단 여부		비고
	합계	최초 신고	인지신고*	학 대	학대 아님	
2020	117	100	17	100	17	-
2021	161	141	20	100	61	-
2022	200	179	21	137	62	-
2023	202	194	8	125	69	기타 4건, 조사 중 4건
2024	72	71	1	16	11	조사 45중
소 계	752	685	67	478	220	기타 4건, 조사 중 49건

2) 강서구, 노원구, 서대문구, 서초구, 양천구, 중랑구

3) 서울대학교병원(서울), 인천의료원(인천), 전남대학교병원(광주), 충남대학교병원(대전), 울산대학교병원(울산), 용인세브란스병원(경기), 충북대학교병원(충북), 단국대학교병원(충남), 전북대학교병원(전북),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경북), 창원한마음병원(경남)

4)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 (2024. 1. 21.)

5) 강서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6)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관할 (마포구 신수동 소재)

* (인지신고) 아동학대 조사결과 가족 내 신고되지 않았으나 조사과정 중 학대로 판단된 아동 수

○ 아동학대 피해아동 조치 현황

연도	합계 (a+b+c)	학대 판단					조사중 (b)	일반사례 (c)
		소계 (a)	원가정 보호 ¹⁾	분리 조치 ¹⁾	가정 복귀	사 망		
2020	117	100	84	16	0	0	0	17
2021	161	100	80	20	0	0	0	61
2022	200	137	127	10	0	0	0	63
2023	202	125	96	13	0	0	4	69
2024	72	16	16	0	0	0	45	11
소 계	752	478	403	59	0	0	49	221

* 1) 원가정보호: 피해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에 의해 계속적으로 보호 받고 있는 아동, 학대행위자 수사의뢰 및 모니터링 진행

* II) 분리조치 : 시설보호 및 친인척 보호

○ 아동학대 유형별 세부 현황

연도	학대 판단					
	소 계 (a+b+c+d-e)	신체(a)	정서(b)	성(c)	방임(d)	중복(e)
2020	100	75	75	2	16	68
2021	100	76	74	5	12	67
2022	137	88	84	1	7	43
2023	125	45	88	11	10	29
2024	16	7	10	0	2	3
소계	478	291	331	19	47	210

○ 아동학대 행위자 세부 현황

연도	합계	친부	친모	계부	계모	부모의 동거인	친인척	(외)조부모	시설 종사자*	기타
2020	100	58	40	1	0	1	0	0	0	0
2021	100	55	35	2	0	2	1	2	2	1
2022	137	66	52	1	0	1	2	2	5	8
2023	125	58	22	1	0	0	1	0	42	1
2024	16	4	9	0	0	0	1	0	1	1
소계	478	241	158	5	0	4	5	4	50	11

* (시설종사자) 아동복지시설, 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아동이 이용하는 집단 시설 내

종사

□ 아동학대 관련 민관협력 및 판단회의 운영 현황 (기준 : '24. 5. 1.)

○ 아동학대 사례 판단회의 운영 : 총 158회(일반 142회, 전문가 회의 16회)

- 21년 운영 실적 : 총 44회 실시(일반 41회, 전문가 회의 3회)
- 22년 운영 실적 : 총 51회 실시(일반 41회, 전문가 회의 10회)
- 23년 운영 실적 : 총 46회 실시(일반 43회, 전문가 회의 3회)
- 24년 운영 실적 : 총 17회 실시(일반 17회)

- 목적 : 아동학대 여부 판단 및 사안에 따라 전문가 자문 수행
- 운영 : 일반회의(주 1회 이상), 전문가회의(필요시 개최)
- 구성 : 총 7명(마포구청 아동학대 관련 팀장, 주무관 당연 포함)

- ※ 아동학대 사례 중 전문가 회의에 상정 사유 사례
- ① 어린이집, 학원, 학교 등 집단생활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 ② 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의 분리 조치 등 법적 보호조치 등 방법 논의 시
 - ③ 아동이 영유아, 장애 등 의사 표현이 힘든 경우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상태에 대한 객관적 상태 확인 및 학대 개연성 판단필요시
 - ④ 일반회의로 학대 판단 힘든 경우: 아동과 행위자 진술이 불일치, 학대 시점이 과거로 객관적 사실파악이 어려움 등

□ 아동학대 예방활동 운영 현황

○ 아동학대 사전예방을 위한 전수조사 수행(기준:2024.5.1.)

구 분	소 계	고위험군 아동 전수 조사 ¹⁾	만3세 가정 내 양육아동 전수조사 ²⁾	재학대 예방 유관기관 합동조사 ³⁾
2021년	503	179	309	15
2022년	531	222	298	11
2023년	511	253	251	7
2024년	142	142(조사중)	4분기 예정	4(12월 추가 예정)
총 계	1,687	796	858	37

- 1) (고위험군 아동) 영유아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의료기관 미진료, 사각지대(단전·단수 등), 장애아동 등 학대 발생 노출도가 높은 가구(행복이음 분기별 추출)
- 2) (만3세 가정 내 양육아동)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내지 않고 홈스쿨 등 진행하는 가구 (행복이음추출)
- 3) (재학대 예방 유관기관 합동조사) 학대 신고 2회 이상, 보호조치(시설입소)

후 원가정 복귀 아동, 사례관리 거부(비협조)가구 등에 구청, 경찰, 아보전이
 합동 방문 점검 실시

아동학대 대응 당직근무 현황(기준 : '24. 5. 1.)

- 당직 편성 : 총 5명(아동보호팀장 및 주무관 4명)
- 당직 운영 : 2개조(2인1조), 야간 및 휴일 24시 운영(재택, 조별 격주운영)
- 운영 및 조치결과

구 분	소 계	조치사항		
		응급조치 ¹⁾	현장종결 ²⁾	유선상담 ³⁾
2024년	22건	4건	2건	14건
2023년	43건	3건	5건	35건
2022년	102건	11건	3건	88건
소 계	150건	14건	8건	128건

- 1) 응급조치 :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따라 제지, 격리,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 인도 등 조치
- 2) 현장종결 : 현장조사 결과 단순 가출 등 아동학대 요건 불성립으로 현장 종결
- 3) 유선상담 : 아동학대 의심 관련 신고절차, 보호조치 인정여부 등 유선 상 업무 수행

3. 서울시 아동학대 응급조치 시설 : 9개소

- 3개월 입소, 최대 6개월 가능(1회 연장)
- 3개월 후 가정복귀가 어려운 경우, 장기시설로 전원조치함

시설명	정원	주 소	비고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30	강남구 광평로34길 124(수서동)	36개월미만
이름 학대피해아동쉼터	변동	노원구 이하 비공개	여아
꿈자람 학대피해아동쉼터	변동	동대문구 이하 비공개	여아
다운 학대피해아동쉼터	변동	관악구 이하 비공개	남아
꿈나래 학대피해아동쉼터	변동	서초구 이하 비공개	여아
오유 학대피해아동쉼터	변동	동대문구 이하 비공개	여아
꿈마루 학대피해아동쉼터	변동	비공개	남아
꿈누리 학대피해아동쉼터	변동	양천구 이하 비공개	여아
서부 아동상담치료센터	49	은평구 백련산로 14길 20-11	마포구 관할